

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
평가 산출 방법

□ 성적 평가

○ 대학교 재학생

- 학점 순으로 정렬하되 학점 만점이 4.5가 아닌 경우 4.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

○ 신입생

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

- 국어영역, 수학영역, 탐구영역(상대평가) : 백분위로 평가
- 한국사영역, 영어영역(절대평가) : 등급별 감점 적용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영 어	0	0.5	1.0	1.5	2.0	2.5	3.0	3.5	4.0
한국사	0	0	0	0.4	0.8	1.2	1.6	2	2.4

- 수능 성적 산출

- ① 국어영역, 수학영역,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
- ② 영어영역,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
- ③ 국어영역, 수학영역,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

☞ 환산 점수 = (① + ②) ÷ ③

※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

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[예시]

구 분	한국사 영역	국어 영역	수학 영역	영어 영역	사회탐구 영역		제2외국어 /한문 영역
			나형		생활과 윤리	사회·문화	
표준점수		131	137		53	64	69
백 분 위		93	95		75	93	95
등 급	4	2	2	3	4	2	2

- ① 국어영역, 수학영역,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

→ $93 + 95 + [(75 + 93) \div 2] = 272.0$

- ② 영어영역,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

→ $1.0(\text{영어영역}) + 0.4(\text{한국사영역}) = 1.4$

- ③ 국어영역, 수학영역,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→ 3

☞ 환산 점수 = $(272 - 1.4) \div 3 = 90.20$

②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

-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

환산점수 : (과목별 원점수 × 이수단위)의 합 ÷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

교과	과목	1학기			
		단위수	원점수/과목평균 (표준편차)	성취도* (수강자수)	석차 등급
국어	국어	2	91 / 77.3(16.0)	A(27)	3
수학	수학	2	97 / 77.2(18.0)	A(27)	2
영어	실용영어	2	92 / 67.5(19.9)	A(27)	2
사회	한국사	3	84 / 70.9(18.7)	B(27)	4
체육	체육	2	96 / 90.7(7.5)	A(27)	
예술(음악/미술)	음악	2	92 / 86.4(7.7)	A(27)	
제2외국어	일본어	3	95 / 78.3(15.4)	A(27)	2
공업에 관한교과	공업일반	2	87 / 74.4(15.8)	B(27)	
공업에 관한교과	기계일반	2	87 / 68.4(19.8)	B(27)	

① (과목별 원점수 × 이수단위)의 합 : 1,445

→ $2 \times 91 + 2 \times 97 + 2 \times 92 + 3 \times 84 + 2 \times 96 + 2 \times 92 + 3 \times 95 + 2 \times 87 + 2 \times 87 = 1,821$

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

→ $2 + 2 + 2 + 3 + 2 + 2 + 3 + 2 + 2 = 20$ 환산 점수 : $1,821 \div 20 = 91.05$

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

-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

환산 점수 : 과목별 원점수의 합 ÷ 과목 수

참고 자료 <신입생 성적증빙서류 및 발급안내>

정시합격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

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: <https://csatscorecard.kice.re.kr>

수시합격자 고교생활기록부

나이스 대국민서비스 : <https://www.neis.go.kr>

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

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4001&CappBizCD=13404000019&tp_seq=02

□ 수상실적 평가

○ 별지 6호(수상실적 증명서) 본인 작성 후 제출

- 본인이 참석 대회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

○ 수상실적 평가표 배점산출

- 해당 대회명칭 및 수상 종목 등수(예: 대상, 금상, 은상일 경우 은상은 3위)

※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, 장학금 1인 1회만 지급하며,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

규모	주최자 및 대회 기준	배 점		
		1위	2위	3위
국제	• 세계 대회	100	90	80
	• 아시아 대회	80	70	60
전국	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계대회 선발전 • 전국 단위 규모 대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, 공공기관*,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-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	60	50	40
	2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대회 선발전 • 시도 단위 규모 전국대회 •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	40	30	20
	3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 시군 단위 규모 전국대회 • 사단법인, 재단법인 주최 전국 대회 	20	10	5

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

※ 단체종목의 경우 금년 대회 수상자중 1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

□ 소득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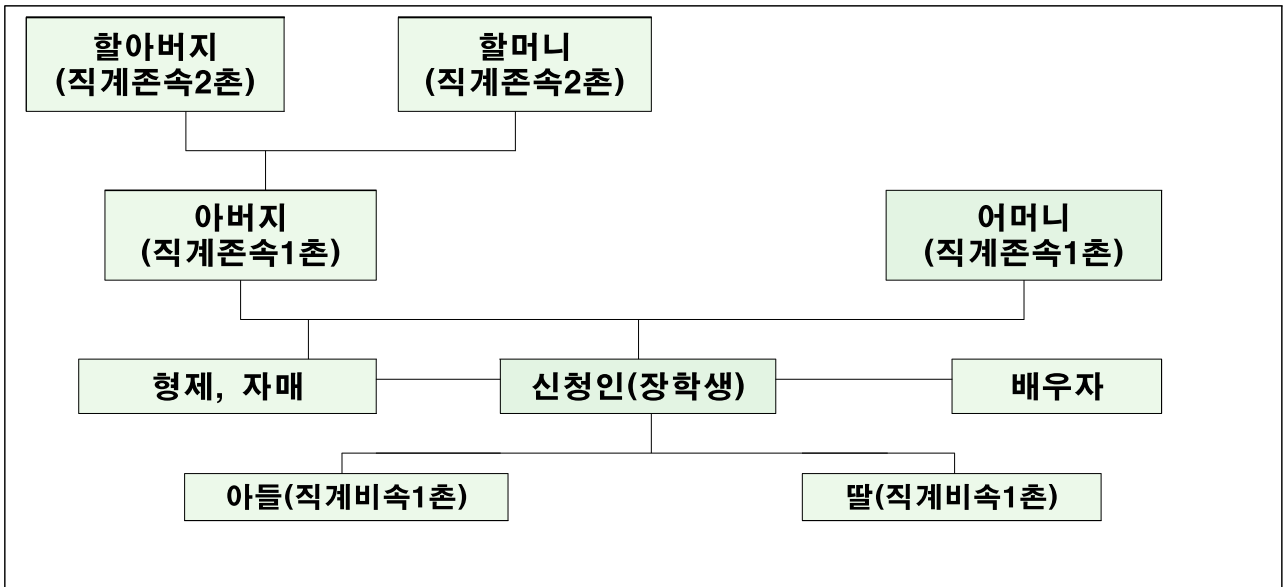
< 공통사항 >

- (원칙) 아래의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(소득)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(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 시 모두 제출)
 -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minwon.nhis.or.kr>) 공인 인증서 로그인 혹은 ARS) 1577-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
 -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제출

< 소득조사 >

가. 가구원 수 산정

- (원칙)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'주민등록표'상에 기재된 가구원
 - 지원 대상 학생 본인,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, 2촌 이내의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, 형제 자매 ※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·자매 제외



- (예외)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(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) 또는 형제자매 (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)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 - ※ 조부모, 친인척, 동거인,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(모)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 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

- (기타사항)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

참고 자료

예시 1

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(주민등록표 기준)

예시 2

장학금을 신청한 아동(주민등록표상 2인 : 어머니, 아동)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 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

예시 3

장학금을 신청한 노인(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: 노인, 아들1)이 따로 사는 아들2(4인가구, 사돈 포함)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,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를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

나. 보험료 산출방법

- (산식)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÷ 납부개월수(3월)
 -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,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
 -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
 - ※ 장기요양보험료, 연말정산 제외
- (보험료 합산)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(맞벌이 등)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,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
 -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(높은 보험료+낮은 보험료×0.5)

다. 중위소득 확인방법

- 중위소득 100%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

[배점기준 표 : (출처) 보건복지부(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)]

중위소득	배점	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							
	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65%	75		69,016	89,069	109,494	129,761	148,183	168,195	188,208	206,575	228,860
70%	70		74,442	96,094	118,285	139,769	159,583	182,541	203,558	224,800	246,992
80%	65		84,793	109,494	134,046	159,583	182,541	206,575	233,144	257,849	278,094
90%	60		95,459	124,236	151,860	179,764	206,575	233,144	263,923	286,737	321,769
100%	55		106,150	137,051	168,195	200,355	228,860	257,849	296,707	321,769	354,781
110%	50		116,980	151,860	185,377	220,987	252,295	286,737	321,769	354,781	414,255
120%	45		128,342	165,968	203,558	237,681	278,094	321,769	354,781	380,152	449,388
130%	40		138,050	179,764	220,987	257,849	296,707	337,302	380,152	414,255	486,115

중위소득	배점	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							
	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65%	75		23,243	58,319	99,230	119,161	145,418	171,434	197,468	220,777	248,793
70%	70		29,993	73,547	114,866	133,989	160,445	190,479	216,474	243,655	271,376
80%	65		48,962	99,230	125,647	160,445	190,479	220,777	254,052	284,709	309,041
90%	60		71,524	114,866	150,326	186,898	220,777	254,052	292,055	318,891	356,168
100%	55		92,988	129,575	171,434	212,560	248,783	284,709	329,659	356,168	393,994
110%	50		113,719	150,326	193,676	238,835	277,765	318,891	356,168	393,994	456,308
120%	45		117,560	168,444	216,474	259,446	309,041	356,168	393,994	420,252	494,952
130%	40		132,037	186,898	238,835	284,709	329,659	373,124	420,252	456,308	531,814

중위소득	배점	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							
	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	9명	10명
65%	75		69,718	89,626	110,271	131,102	150,077	170,536	191,093	209,941	233,144
70%	70		75,224	96,855	119,635	141,396	161,571	185,377	206,575	228,860	252,295
80%	65		85,605	110,271	135,612	161,571	185,377	209,941	237,681	263,923	286,737
90%	60		96,094	125,705	153,838	182,541	209,941	237,681	270,748	296,707	337,302
100%	55		107,179	138,050	170,536	203,558	233,144	263,923	308,297	337,302	380,152
110%	50		118,285	153,838	188,208	224,800	257,849	296,707	337,302	380,152	449,388
120%	45		129,761	168,195	206,575	242,008	286,737	337,302	380,152	414,255	486,115
130%	40		137,769	182,541	224,800	263,923	308,297	354,781	414,255	449,388	540,144

※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

<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>

구분	배점	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	제출서류	
기초생활수급자	100	기초생계급여수급자(30%)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	
	95	기초의료급여수급자(40%)		
차상위 계층	90	기초주거급여수급자(43%)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, 교육)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(NEIS 발급)	
	85	기초교육급여수급자(50%)		
	80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	한부모가족증명서
		차상위자활대상자		자활근로자 확인서
	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차상위계층대상자		차상위계층확인서		
기준중위소득이하	75	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	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(최근 3개월분) +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)	
	70	환산점수 65%초과		
	65	환산점수 70%초과~80%이하		
	60	환산점수 80%초과~90%이하		
	55	환산점수 90%초과~100%이하		
※ 환산점수 10% 증가시마다 5점씩 감소				

※ 대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한 학자금 지원구간 제출

<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경곶값(출처: 한국장학재단)>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기준 중위소득 비율
1구간	1,384,061원(이하)	1,424,752원(이하)	1,462,887원(이하)	30%
2구간	2,306,768원(이하)	2,374,587원(이하)	2,438,145원(이하)	50%
3구간	3,229,475원(이하)	3,324,422원(이하)	3,413,403원(이하)	70%
4구간	4,152,182원(이하)	4,274,257원(이하)	4,388,661원(이하)	90%
5구간	4,613,536원(이하)	4,749,174원(이하)	4,876,290원(이하)	100%
6구간	5,997,597원(이하)	6,173,926원(이하)	6,339,177원(이하)	130%
7구간	6,920,304원(이하)	7,123,761원(이하)	7,314,435원(이하)	150%
8구간	9,227,072원(이하)	9,498,348원(이하)	9,752,580원(이하)	200%
9구간	13,840,608원(이하)	14,247,522원(이하)	14,628,870원(이하)	300%
10구간	13,840,608원(초과)	14,247,522원(초과)	14,628,870원(초과)	-

※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'월 소득인정액'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

(참고)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

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생계급여 선정기준“이라 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.

제12조의3(의료급여)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(이하 이 항에서 “의료급여 선정기준“이라 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중 “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“를 “소득인정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(이하 이 항에서 “주거급여 선정기준“이라 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“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.

제12조(교육급여)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(이하 “교육급여 선정기준“이라 한다)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 <신설 2014. 12. 30.>